

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

[시행규칙]

제6조(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대상 및 기간 등)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
1.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학교·법인
2.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
3. 법 제19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
4. 국가환경교육센터
5.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

[법]

1. 제2조(정의) 2. “학교환경교육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·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.
 - 가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 - 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 - 다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 - 라.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,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,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
2. 제15조(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) ①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3. 제19조(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)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,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환경교육기관을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해양환경 분야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.
4. 국가환경교육센터
5. 제25조(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) ① 시·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 1.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 2.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·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
 3.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
 4.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